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98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 박홍근・이재관・민병덕

오세희 · 김남근 · 이수진

이건태 • 한정애 • 염태영

홍기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의무 사항으로 주류를 판매·제 공하지 아니할 것과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폐쇄, 등록취소 등과 같 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그러나 노래연습장업자가 현실적으로 이용자의 소지품 등을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가 주류를 몰래 반입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 몰래 영업소 안에 주류를 반입하였고 그 사실을 노래연습장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음악산업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제공하지"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 1.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 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

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이용자가 노래연습장 업자를 속여 영업소 안에 주류를 반입하였고 그 사실을 노래연습 장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
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류를 판매· <u>제공하지</u> 아니	3 <u>제공하거나 이</u>
할 것	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	
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	
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	
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u>하고, 제</u>	<u>한다</u> .
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	

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 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 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 1. ~ 6.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 1.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 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 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

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를 속여 영업소안에 주류를 반입하였고 그사실을 노래연습장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u>②</u>·<u>③</u> (생 략)